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89
------------	-----

2012년 6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12월 9일, 남재경 의원 외 17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1년 12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2년 6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남재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가 대중교통 대시민서비스를 증진할 목적으로 2004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 재정지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서울시로부터 막대한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부채내역 등 경영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또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내버스 안전운행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동 조례에서는 서울시가 막대한 재원을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내버스의 부채내역과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시민의 신뢰를 얻고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것임

또한 동 조례에 시내버스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이용편의 제고는 물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장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원가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안 제3조)
- 사업자는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함(안 제4조)
-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보조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 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을 집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토록 함(안 제7조)

- 시장이 사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재정지원금 집행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 투명한 재정지원 및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9조)
-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사용 및 시내버스 안전 운행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0조)
- 시민의 교통안전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운행 방안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가.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2004년 7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 의견

1)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서울시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서울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나¹⁾ 서울시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황 조사와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²⁾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도³⁾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버스 재정 지원금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불분명하고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부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해 왔음

이런 점에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재정지원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명

1) 2007년 2,104억원, 2008년 2,448억원, 2009년 2,931억원, 2010년 3,098억원, 2011년 4,811억원(추정)

2) 서울시의회 제231회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1.06.29) 회의록 참고

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010.8),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p.1.

문화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2) 정의 관련(안 제2조)

- 동 조례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및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먼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근거 규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으로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근거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인 점을 고려할 때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표준운송원가’의 경우 현행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⁵⁾에서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달리 정의하고 있는 바⁶⁾

현재 시행·운영중인 용어 정의를 반영함으로써 조례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 운용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3) 표준운송원가 산정 관련(안 제3조)

- 동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이 1년 단위로 공인회계사 등의 대행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토록 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5)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2011.12.19) 및 시행(2012.1.5), 동 조례 제2조제10호

6)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

동 규정은 버스재정지원의 근거인 표준운송원가 산정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시장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토록 하는 사항은 자칫 시장이 일방적으로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비취질 소지가 있는 바⁷⁾,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의 및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되는 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4) 외부회계감사 관련(안 제4조)

- 동 조례안 제4조는 시내버스 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기준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시장은 외부회계법인 등을 통해 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⁸⁾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현행 외감법 제2조⁹⁾에서 자산총액 및 종업원 수 등에 있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¹⁰⁾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자로 하여금 서울시가 정한 회계기준 내에서 회계감사를

7)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조정 절차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1113, 2011.12.21)

8)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11년 5월 조례 제정을 통해 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음(조례 제438호,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15조(외부회계감사))

9)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0) 제5조(회계감사기준)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도록 하는 사항은 외감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¹¹⁾

또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자문의견에서도 상위법의 위임규정 없이 조례로 별도의 회계기준을 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¹²⁾,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안 제5조)

- 동 조례안 제5조는 시장이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 하되 이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¹³⁾ 이것은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동 조제3항에서 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보조금 차등지원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바,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의 및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평가 및 보조금 지급 사항이 결정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1) 버스관리과-1377, 2012.1.31

12) 입법담당관-481, 2012.2.21

13)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6)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관련(안 제6조)

- 동 조례안 제6조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동 조례에서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서울시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다만, 현행 표준운송원가는¹⁴⁾ 운전직 인건비 및 연료비 등의 실비정산 항목과 정비직 인건비 및 차량감가상각비 등 표준정산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중 표준정산 항목은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1일 1대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지급함에 따라 정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비정산 항목도 현재 2개월 단위로 정산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와 재정지원 받은 사업자가 실비정산 항목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정산하고 있는 운영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7) 양벌규정 관련(안 제7조)

- 동 조례안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음

14) 현재 표준운송원가의 13개 항목은 편의상 크게 실비정산 항목과 표준정산 항목으로 구분되며, 실비정산 항목은 실제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표준정산 항목은 세부 항목으로 구분은 하되 실제지급은 1일 1대당 비용을 합산하여 지급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성과이윤 지급제외는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¹⁵⁾

그러나 대구시의 경우 자료제출 거부시 재정지원 중단 또는 자금 회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고¹⁶⁾,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재정지원금을 중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촉구하였던 점을¹⁷⁾고려할 때,

동 개정안에서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재정지원금의 투명사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8) 안전운행 방안 관련(안 제11조)

- 동 조례안은 음주운전경력자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자에 대해 시내버스 운영을 제한하고, CNG 용기에 대해 월 1회의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운행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법규위반자에 대한 시내버스 운영제한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동 사항이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를¹⁸⁾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서울시의회의 입법법률 고문도 『지방자치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¹⁹⁾ 동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CNG 용기에 대해 월 1회의 정기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사항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²⁰⁾ CNG 시내버스의 내

15) 문서번호 제1113호(2011.12.21)

16)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조례』 제9조제4호

1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010.8), “버스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p431.

18)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19) 서울시의회 입법법률 자문결과 세 명 모두 법규위반자에 대한 운영제한은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0)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압용기 정기검사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9) 기타 의견(제명 관련)

- 동 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함께 시내버스 이용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운행 방안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의 제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은 법령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 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동 조례안의 제명을 “(가칭)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제명이 조례의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시장이 정한 회계기준 내에서 외부회계법인 등으로 하여금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항 및 법규위반자에 대해 시내버스 운영을 제한토록 하는 사항 등은 관련 법령을 위배한다는 견해가 있는 바 관련 부분을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함
- 조례 제명이 조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지원금 정산 관련 규정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제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운영현실을 반영하도록 수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시 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함
- 서울시가 지원한 재정지원금 중 실비정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사업자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 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도록 하고, CNG 용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89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2년 6월 25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장이 정한 회계기준 내에서 외부회계법인 등으로 하여금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사항 및 법규위반자에 대해 시내버스 운영을 제한토록 하는 사항 등은 관련 법령을 위배한다는 견해가 있는 바 관련 부분을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함
- 조례 제명이 조례의 전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지원금 정산 관련 규정 중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실제 운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운영현실을 반영하도록 수정함

2. 주요 골자

- 가.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시 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 서울시가 지원한 재정지원금 중 실비정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 사업자는 시내버스 운전자가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 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도록 하고, CNG 용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 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표준운송원가”란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영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시 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보조금”을 “성과이윤율”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집행 후 1개월”을 “재정지원금 중 실비정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 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해당 사업자”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 ⑤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수정안
<p>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안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시내버스운송사업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p> <p>2.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p> <p>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영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p>제4조(외부회계감사) ① 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하며, 문제가 많다고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p> <p>② 시장은 외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안</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시내버스운송사업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p> <p>2. “표준운송원가”란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영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p> <p>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시 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외부회계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삭제</p>

<p>제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집행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 중 실비정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7조(양벌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p>	<p>제7조(양벌규정) (현행과 같음)</p>
<p>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시의회 보고) (현행과 같음)</p>
<p>제9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정성을 파악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p>	<p>제9조(시장의 책무)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p>	<p>제10조(사업자의 책무) (현행과 같음)</p>

<p>제11조(안전운행 방안) ① 시장 및 사업자는 음주운전경력자, 난폭운전자 및 교통법규위반자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자의 시내버스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신호위반, 무정차 통과 등의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2회씩의 특별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한다.</p> <p>③ 사업자는 시내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p> <p>④ 사업자는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저상버스 등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 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p>	<p>제11조(안전운행 방안) ① 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p>
<p>제12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제12조(준용) (현행과 같음)</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안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표준운송원가”란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시 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외부회계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 중 실비정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양벌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제8조(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정성을 파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제11조(안전운행 방안) ① 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

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내버스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시내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저상버스 등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